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관리) ①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고용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자현황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 인적사항 및 기술자격현황(기술자격증사본 첨부)
2. 건설기술자 현장경력현황
3. 건설기술자 보수교육이수현황
4. 기타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각호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현황을 제출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의 신규고용
2. 건설기술자의 퇴직 또는 해임
3. 건설기술자의 현장이동
4.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이수

제3조(경력사항 확인등) ① 건설부장관은 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기술능력등(이하 "경력사항"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 장은 경력사항의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 장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 대상자) 영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또는 해외건설협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가 고용한 건설기술자
3. 기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제5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는 매 5년마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2주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건설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교육비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말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 교과목 및 교육기간
2. 교재사용계획(실습교재 포함)
3. 교사현황
4. 교육대상인원 및 교육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장은 소정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이수현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술자관리 및 교육훈련의 대행법인) 영 제8조의 규정에서 "건설기술자단체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관리를 대행하는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을 말한다.

제7조(심의평가단의 구성등) ①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중앙위원회의 관련 부위원장이 되고, 단원은 중앙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각 기술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기술분야별 인원은 5명 내지 10명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평가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술분야별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평가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시공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2. 새로운 공법의 적용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3. 기타 건설공사 시공수준의 평가 및 시공에 대한 자문

③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이하 "심의평가"라 한다)의 평가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 평가요령서에 의한다.

④ 심의평가는 당해 공사의 시공기간중에 실시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준공된 후에 당해 공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⑤ 건설부장관은 심의평가의 결과를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통보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수립) 영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당해 연구에 대한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목표 및 연구내용
2. 연구추진계획
3. 연구수행부서 및 관련기관
4. 연구성과 활용방안
5. 기타 정부의 연구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 영 제30조 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가진 자로서 당해 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100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10조(신기술의 지정신청등) ① 영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고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로의 고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보완서류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수와 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제출에 소요되는 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

여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을 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용역발주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영실태, 실적, 보유기술자의 능력·작업계획 및 방법(이하 "기술제안"이라 한다)을 별표1의 기술제안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상위고득점순으로 2개사 또는 3개사를 선정한다. 다만, 용역발주관서의 장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방법을 용역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제외공사) 영 제39조 제2항의 제5호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교도소, 구치소등 교정시설의 건설공사
2.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공사
3. 구조물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공종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 포장도로의 덧씌우기공사
   나. 준설공사
   다. 사방공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업용도로공사
   라. 단순굴토공사 또는 정지공사등

제13조(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0조 제2항 제5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제12조 제3호의 공사를 말한다.

제14조(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지정기준등) ① 영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공사발주관서가 공사감독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 예정된 공사전부를 지정한다.
2. 공사발주관서가 공사감독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는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당해 공사의 기술적 요구수준, 보유기술인력의 전문적 지식, 기술수준 및 경험과 공사관리 및 품질관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 시·도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 예정된 공사중 1건이상을 지정한다.

②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총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의 공사전부에 대하여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년도 2월말일까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를 지정하고 건설부장관 및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전면책임감리시 담당직원의 업무)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와 관련된 민원업무
2. 공사발주관서의 장과 시공감리자와의 연락업무
3. 기타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현장상주감리자의 경력확인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현장에 상주하게 되는 책임시공감리자, 및 보조 감리자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책임시공감리자 및 보조감리자가 당해 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와 협의하여 이들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되는 보조감리자의 수는 시공감리의 경우에는 2명이상으로, 전면책임감리의 경우에는 4명이상으로 하되, 당해 공사의 규모, 공종, 공사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감안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감리전문회사 등록기간공고) 건설부장관은 매 2년마다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로 등록신청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임원 및 보유기술자의 이력서·신원증명서
2. 대표자·보유기술자의 기술자격현황 및 자격증사본(기술자격증이 없는 고급기술자와 기술자는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및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당해 법인이 감리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정관및 등기부등본
4. 자본금 및 준비금을 증빙하는 자료
5. 사무실보유를 증빙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등)
6.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 공고일이후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의 교부 및 사후관리)① 건설부장관은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매 3년마다 1회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무관리상태가 부실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등의 신고) ① 감리전문회사가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한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건설부장관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증 재교부신청등) ①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재교부신청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구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증의 게시와 장부의 비치) 감리전문회사는 사무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은 기재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대표자·임직원 및 보유기술자 이력카드
3. 기술자격자현황 및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빙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보유를 증빙하는 서류
6. 보유장비 명세서 및 증빙서류
7. 연간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체결현황 및 관계서류(상주배치 기술자현황등)

제23조(현지확인)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이 있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이 사항을 현지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
2. 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보유현황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현황
5. 자본금현황 및 자산운용실태
6. 기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공사감독관의 업무)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
2.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위반에 대한 사항
3.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② 공사감독관은 천재지변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등에 의거 공사를 감독하여, 용지보상업무를 지원한다.

④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표를 작성·정리 또는 비치하여 준공후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
   가. 공사명령부
   나. 공사감독일지
   다. 발생품정리부
   라. 관급자재수불상황 및 잉여자재보고
   마. 세부공정계획
   바. 품질관리시험성과대장
2. 도표
   가. 공정표
   나. 천후표등 일기관계표
   다. 선정 및 관리시험표
3. 기타
   가. 매몰부분 검사조서 및 사진
   나.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다. 시공상세도
   라. 야장 및 사진첩등

⑤ 공사감독관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공사발주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은 시공자가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착수보고
2. 공사시공측량보고
3.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4. 관급자재 대체사용신청
5. 설계변경 요청원
6. 준공기한연기원
7. 준공검사원
8.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요청
9.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등 서류

⑦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배치되는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및 그의 기술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발주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감리시 공사감독관의 업무) ① 시공감리시 공사감독관은 제24조에서 규정한 업무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감리가 계약대로 되고 있는 지의 확인
2. 시공감리자와 시공자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정
3. 공사감리일지의 수시확인
4.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시공감리자에게 요구한 사항의 이행여부의 확인

② 시공감리시 공사감독관은 시공감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적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감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2. 공법의 변경
3. 기술적 문제의 해결
4. 기성고 사정
5. 제24조 제6항각호의 사항

③ 시공감리시 공사감독관이 영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2제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시공감리시 공사감독은 공사진행중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책을 시공감리자와 협의하여 강구하는 등 시공감리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6조(공사안내표지판등) ①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공사의 착수시에 공사의 내용을 알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안내표지판을 공사구역의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대상규모이상인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보기 쉬운 위치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등 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준공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회사(현장대리인), 감리대상공사인 경우 감리전문회사(책임시공감리자), 공사발주관서(공사감독관) 및 설계자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제27조(시공평가)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시공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연도에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시공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평가단은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3인(단장포함)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준공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중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준공시 실시하는 시공평가결과에 40%의 비율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④ 시공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며, 시공중 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한다.

⑤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영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평가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총괄표와 공사건별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하자발생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 하자를 발생시킨 공사는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시공능력평가) 영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건설업자별로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평균점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써 평가한다.
1.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한다.

하 자 발 생 율	감점점수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일때	0.5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100분의 5증가 때마다	0.5

2.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최근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매 회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한다.
3.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 이상을 당해 연도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한다.
4. 최근 3년이내의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결과 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 또는 감산한다.

제30조(우수건설업자지정) ① 영 제59조 제1항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는 전체대상건설업자의 5%이내의 범위내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평가평점의 평

〔별표 1〕

기 술 제 안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1. 회사의 경실실대	- 자기자본이익율 - 부채율 - 신기술개발 및 기술개발 투자실적 - 해당분야 수주실적	10 (2) (2) (2) (4)	○ 상대평가 - 자기자본이익율과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해당분야 수주실적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자 기준 - 부채율은 가장 낮은 자 기준
2. 참여 기술자	- 자격증 - 해당분야 경력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50 (10) (20) (20)	○ 상대평가
3. 작업계 계획 및 수법	- 과업수행계획 및 수행기법 - 과업수행체계 및 인원구성 - 보유장비 및 프로그램등 기타 필요한 자료	40 (20) (10) (10)	○ 상대평가
4. 기타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 전차용역과 연계된 용역인 경우	10 10	○ 절대평가 - 전차용역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가 없으면 : 50% - 전차용역시행후 : 3년이내 100%, 3년경과 5년이내 70%, 5년이상 10년 50% - 국토 및 지역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등 종합계획과 연관된 용역 : 50% - 전차용역시 공동도급인 경우는 도급비율 적용

구 분	배점 합계	사업 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 별기 술자
계	50	20	20	10
자격증	10	4	4	2
경력	20	8	8	4
해당실적	20	8	8	4

*1) 상대평가시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정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한다.

감리전문회사 보유장비기준

〔별표2〕

구 분		장 비 명	기 준
시공감리전문회사	토목	전자계산기	주변기기를 갖춘 퍼스널 컴퓨터 16비트(XT)급이상(보조기억장치로 하드디스크 20MB 이상 내장)
		측 량 기	광파측정기, 트랜시트, 레벨 각 1대이상
		시험 장비	골재시험장비, 토질시험장비(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를 제외한다). 콘크리트시험장비, 아스팔트시험장비, 콘크리트 Test Hammer, 밀도·함수량측정기, 철근 탐지기
	건축	전자계산기	주변기기를 갖춘 퍼스널 컴퓨터 16비트(XT)급이상(보조기억장치로 하드디스크 20MB 이상 내장)
		측 량 기	트랜시트, 레벨 각 1대이상
		시험 장비	골재시험장비, 콘크리트시험장비, 중량계측기, 액체비중계, 도막두께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콘크리트 Test Hammer, 철근탐지기, 타일인발시험기
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토목	전자계산기	주변기기를 갖춘 퍼스널 컴퓨터 16비트(AT)급 이상(보조기억장치로 하드디스크 20MB 이상 내장)
		측 량 기	광파측정기, 트랜시트, 레벨 각 1대이상
		시험 장비	골재시험장비, 토질시험장비, 콘크리트시험장비, 아스팔트시험장비, 콘크리트 Test Hammer, 밀도·함수량측정기, 철근탐지기
	건축	전자계산기	주변기기를 갖춘 퍼스널 컴퓨터 16비트(AT)급 이상(보조기억장치로 하드디스크 20MB 이상 내장)
		측 량 기	트랜시트, 레벨 각 1대이상
		시험 장비	만능시험기(용량1톤), 코어채취기, 골재시험장비, 콘크리트시험장비, 중량계측기, 액체비중계, 도막두께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콘크리트 Test Hammer, 철근탐지기, 타일인발시험기

*주1 : 시험장비의 종류는 영 별표2의 구분에 의한다.

균이 90점이상인 자를 선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건설업자가 될 수 없다.

1. 최근 5년간 시행한 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자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5년이상이 경과되지 않은자
3. 건설업법에 의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최근 2년이내에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최근 3년간 시행한 공사중에서 시공평가결과가 80점이하로 평가된 자
6. 최근 3년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형공사공고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3조(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제3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별표3마목중 "우수시공업자"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한다.

□ 바로잡습니다.

본지 8903호 p. 38~p. 52에 게재된 울산대 成仁洙교수의 연재물 "외국의 현대건축사 소개" 3회분 『컴퓨토피아와 컴퓨토포비아』의 내용 중 p. 39 두째칸 21째줄 "Apple호환기종…" 부터 p. 40 두째칸 5째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까지의 내용은 p. 40 세째칸 26째줄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삼보 컴퓨터"가 다음에 삽입되어야 할 내용이었으나 조판상의 실수로 내용순서가 바뀌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편집자 주—